

해양배출처리기준 (제12조제2항 관련)

1. 별표 6 제1호나목·다목 및 사목의 폐기물 (mg/kg, 건중량 기준)

구분	제1기준	제2기준
유분(광유류)	10,000	2,000
시안화합물	200	40
페놀류	4,000	800
크롬 또는 그 화합물	1,850	370
아연 또는 그 화합물	9,000	1,800
구리 또는 그 화합물	2,000	400
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	20	4
수은 또는 그 화합물	5	1
유기인화합물	100	20
비소 또는 그 화합물	145	29
납 또는 그 화합물	1,100	220
폴리염화비페닐 - 28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52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01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18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38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53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80	0.15	0.03
나프탈렌	4	0.8
페난트렌	5	1
안트라센	4	0.8
벤조(a)피렌	4.5	0.9
플루오란텐	10	2.5
벤조(a)안트라센	5	1
벤조(b)플루오란텐	4	0.8

2. 별표 6 제1호마목·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 (mg/kg, 건중량기준)

구분	제1기준	제2기준
----	------	------

수은 또는 그 화합물	5	1
폴리염화비페닐 - 28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52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01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18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38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53	0.15	0.03
폴리염화비페닐 - 180	0.15	0.03

3.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 (mg/kg, 건중량기준)

구분	제1기준	제2기준
크롬 또는 그 화합물	370	80
아연 또는 그 화합물	410	200
구리 또는 그 화합물	270	65
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	10	2.5
수은 또는 그 화합물	1.2	0.3
비소 또는 그 화합물	70	20
납 또는 그 화합물	220	50
니켈 또는 그 화합물	52	35
총 폴리염화비페닐	0.180	0.023
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	45	4

비고

-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.
 -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.
-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.
-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- 28, 52, 101, 118, 138, 153, 180의 합을 말한다.
-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, 페난트렌, 안트라센, 벤조(a)피렌, 플루오란텐, 벤조(a)안트라센, 벤조(b)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.